

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홍국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1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홍국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곽향기, 김규남,
김동욱, 김영철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박 석,
박성연, 박영한, 서상열,
서호연, 신복자, 유만희,
유정희, 이민석, 이봉준,
이상욱, 이상훈, 이성배,
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
최민규, 허 훈, 황철규
의원(33명)

1. 제안이유

- 도시형소공인은 서울시 전체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, 열악한 노동환경, 저임금 고령화 등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해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- 이에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해 시장에게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보호 육성에 관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.
- 또한,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정책 자문을 위한 비상설로 운영되는 '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'를 신설해 보다 현실 적합한 지원 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시행과 도시형소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노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의2 신설).
- 나.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3항 신설).
- 다.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서울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
2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
3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의3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,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도시형소공인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2.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3.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⑤ 위원회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주요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,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	<u><신 설></u>	제2조의2(책무)	①	서울특별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3조(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) ①·② (생략)		제3조(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) ①·②		(현행과 같음)
	<u><신 설></u>		③	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	<u><신 설></u>	제4조의2(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	①	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

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
2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
3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<신 설>

제4조의3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,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도시형소공인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2.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된

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3.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⑤ 위원회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주요 정책 자문 등 안전 발생 시 소집하고,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서울특별시 서울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서울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2(도시형소공인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제4조의2(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

나. 전제

- 비용은 2026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6~2030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(상·하반기)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
-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2명을 공무원으로 전제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6년~2030년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≙ 19,000천원(연평균 3,8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	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	
지출	○ 제4조의2(위원회)	3,800	3,800	3,800	3,800	3,800	19,000	
	소계(a)	3,800	3,800	3,800	3,800	3,800	19,000	
수입	-	-	-	-	-	-	-	
	소계(b)	-	-	-	-	-	-	
□ 총 비용(a-b)		3,800	3,800	3,800	3,800	3,800	19,000	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서울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2(도시형소공인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- 총비용(합계) ≙ 19,000천원(연평균 3,8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제4조의2(위원회)		3,800	3,800	3,800	3,800	3,800	19,000
	소계(a)		3,800	3,800	3,800	3,800	3,800	19,000
수입	-		-	-	-	-	-	-
	소계(b)	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	3,800	3,800	3,800	3,800	3,800	19,000

-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 = 19,000천원
 - = 참석수당+업무추진경비
 - = 16,000천원+3,000천원

- 참석수당 = 16,000천원
 - = 수당단가×지급인원×연2회×5년
 - = 200천원×8명×2회×5년

※ 지급인원 : 위원 10명 중 공무원(당연직) 2명은 제외

※ 참석수당 단가 : 「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

- 업무추진경비 = 3,000천원
 - = 경비단가×지급인원×연2회×5년
 - = 30천원×10명×2회×5년

※ 업무추진경비 단가 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